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서울시장
- 나. 의안번호 : 제 211 호
- 다. 제출일자 : 2018. 10. 17.
- 라. 회부일자 : 2018. 10. 29.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시 물재생시설 내 주차시설에 대하여도 전기자동차 충전 시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은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5조의2제3항 관련 별표 3)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18. 8. 2. ~ 8. 22.)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 별표3 제2호 나목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¹⁾에 따른 “전기자동차”가 동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물재생시설 내 주차시설²⁾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할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표 1] 개정안 주요골자(안 제5조의2제3항 관련 별표3)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2. 주차시설 가. (생 략) 나. 기타		[별표 3] 2. 주차시설 가. (현행과 같음) 나. 기타	
감면대상	감면율(%)	감면대상	감면율(%)
<신 설>	<신 설>	1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충전 시설을 이용하는 차량	100 (단,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경우 50)

- 서울시는 사회적으로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부문에서 추진 중인 전기자동차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차장법」 제14조제2항³⁾ 및

1)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편의시설"이라 함은 물재생시설 부지 내에 설치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조경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시설 등을 말한다.

「친환경자동차법」 제10조4)에 따라 2017.1.1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제1항제10호를 개정⁵⁾하여,

-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자동차’는 충전 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상기 공영주차장은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물재생시설의 자체 편익시설 중 하나인 물재생시설 내부 주차시설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 이들 편익시설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본 조례 제5조의 2(편익시설의 사용료 등) 별표 2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별표 3에서는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별표 3 중 주차시설의 감면규정에 상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전기자동차 감면규정을 동일하게 준용하여 추가하려는 것으로 현장에서의 혼란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
- 참고로, 현재 서울시 물재생시설 내 주차시설은 탄천물재생센터

3)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4)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9. 생략

1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 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②~③ 생략

제1처리장 상부 복개공원⁶⁾ 내 1개소가 전부이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2017.11.21.일 설치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그림 1> 탄천물재생센터 마루공원 주차장시설 내 충전시설 현황 사진

6) 탄천물재생센터 제1처리장 상부 복개공원 조성현황

1.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580번지 (탄천물재생센터 內)
2. 공사기간 : 2007.1.23 - 2010.01.15.(준공일 : `10.01.15)
3. 사업비 : 38,849,088,000원
4. 면 적 : 49,700㎡
5. 주요시설
 - 휴게시설 : 파고라(23개소), 등의자(24개), 평의자(84개)
 - 유희시설 : 조합놀이대(4개), 그네(1개소), 흔들자동차(3개소), 스프링시소(1개소)
 - 편의시설 : 자전거보관대(3개소), 지압보도(3개소), 음수전(2개소)
 - 운동시설 : 풋살구장(2면), 테니스장(3면), 족구장(2면), 농구장(2면), 배드민턴장(4면), 게이트볼장(1면), 운동시설(16조)
 - 교육시설 : 어린이 교통공원
 - 주차시설 : 125면(일반 121면, 장애인용 4면)
 - 기타시설 : 화장실(1개소), 보도육교(2개소)



<그림 2> 충전시설 이용 사진

- 그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18.1월부터 9월까지 총 163대가 이용했는데 이는 동일기간 동안 주차시설을 이용한 전체 주차건수 대비 0.6% 수준으로 이용률은 극히 미미한 상황임.

[표 3] 탄천물재생시설(주차시설)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황

기 간	1회 시간 주차		월정기권 주차		합 계	전기자동차 현황(대)
	주차건	금 액	신청건수	금 액		
1월	2,200	3,888,900	158	5,553,800	9,442,700	7
2월	2,056	4,062,100	157	5,606,900	9,669,000	4
3월	3,176	6,256,700	156	5,475,800	11,732,500	15
4월	3,269	6,462,100	149	5,123,300	11,585,400	15
5월	3,765	7,578,800	159	5,657,800	13,236,600	22
6월	3,431	7,148,500	152	5,426,100	12,574,600	21
7월	2,982	6,025,360	146	5,141,900	11,167,260	25
8월	2,524	4,560,900	158	5,517,500	10,078,400	27
9월	3,500	7,259,600	144	4,912,400	4,912,400	27
합 계	26,903	53,242,960	1,379	48,415,500	94,398,860	163

※ 2017.11.21. 설치완료하여 운영 중으로 2018.1.1.부터 이용실적

[붙임] 현행 조례 [별표 3]의 주차시설 사용료 감면 범위

[별표 3] 사용료 감면 범위(제5조의2 제3항 관련)

1. (생략)

2. 주차시설

가. 시장이 정하는 지역주민의 감면율은 40%로 하되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적용할 수 있다.

나. 기타

감면대상	감면율(%)
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100
2. 외교공관 및 외교관 차량, 공무수행차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
3.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발행일로부터 1년간)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100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80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2호·제14호,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9. 65세이상의 노인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	80
10.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50
11.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세자녀 이상)가 운전하는 차량	50
12.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두자녀)가 운전하는 차량	30
13. 승용차 요일제 준수차량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에 한함)	30

※ 비고: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